

「아주대학교 학칙」

- 제31조(전과)** ①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및 제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개시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폐지, 지도교수 소속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12.7)
-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
-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「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」

제12장 전과

제56조(정의) 전과라 함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함을 말한다.(개정 2011.11.3)

- 제57조(전과대상 및 시기)** ① 전과대상자는 제2학년 1학기 이상 진급대상자에 한하며, 학생은 재학 중 1회만 전과가 가능하다. (개정 2018.1.2)
- ② 전과는 해당학기 개시 전에 허가하며,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과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<삭제 2018.1.2>

제58조(요건) ① 전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.(개정 2011.11.3) (개정 2012.7.19.) (개정 2014.02.17.)

1.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전 권장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전과 시 전입 허용인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5%이내(의과대학, 간호대학으로의 전과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입학정원 범위 내)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따로 정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4.02.17.)

1.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
2.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
3. 국방IT우수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자 (신설 2014.11.26.)
4.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. 단,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간의 전과에 한하여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 (신설 2018.3.5.)

제59조(공과대학 개편에 따른 전과) 2003학년도 이전 입학한 기계 및 산업공학부, 화학.생물공학부, 환경.도시공학부 소속 학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유로이 전과할 수 있다.(개정 2013.2.14)

1. 기계 및 산업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기계공학과, 산업공학과, 화학공학과, 신소재공학과로 전과하는 경우
2. 화학.생물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화학공학과, 신소재공학과, 응용화학생명공학과로 전과하는 경우
3. 환경.도시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환경공학과, 건설시스템공학과, 교통시스템공학과, 건축학과로 전

과하는 경우

제60조(절차) 전과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전과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및 전입할 학과의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09.9.3) (개정 2011.11.3) (개정 2013.2.14)

제61조(수업연한) 전과한 자의 수업연한은 전과 이전에 이수한 기간을 포함한다.